

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340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22년 10월 17일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「공익신고자 보호법」(’21. 4. 20. 공포, ’21. 10. 21. 시행) 과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(’22. 1. 4. 공포, ’22. 7. 5. 시행) 등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조사·수사결과 통보 의무 규정 신설(안 제8조)

- 이첩·송부사건의 조사·수사결과를 권익위 통보 의무 조항 신설(5항 추가)

나. 공익제보자 책임감면 규정 신설(안 제10조)

- 징계나 행정처분권자의 공익제보자 책임감면 조항 추가 신설(7항 추가)
- 권익위 책임감면 요구에 대한 조치결과 통보 신설(8항 추가)

다. 공익제보자 지원 확대(안 제10조)

- 구조금 지급사유를 ‘공익제보 등을 이유로 한 소송비용’으로 확대(1항3호)

라. 보상금 지급사유 추가 신설 및 보상금 신청기간 확대(안 제11조)

- 보상금 지급 사유를 ‘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에 의한 환

수' 추가 확대(1항3호라목)

- 보상금 지급 신청기간을 수입 회복·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 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3년으로 연장(5항)

마. 포상금 지급사유 확대(안 제11조의2)

- 포상금 지급사유를 '과태료·과징금 부과' 외에도 '부담금·가산금 등 부과'까지 확대(1항4호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「공익신고자 보호법」
-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

다. 기타

- (1) 입법예고(2022.8.25.~9.14.) 결과: 의견없음
- (2) 신·구조문 대비표: 별첨

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⑤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공익제보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은 조사·수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조사결과 또는 수사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.

제10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공익제보 등을 이유로 한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

- ⑦ 공익제보자 등의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는 공익제보 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관계 법령 등에 따라 공익제보자 등에게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그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.
- ⑧ 공익제보자 등의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익제보자 등에 대한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,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.

제11조제1항제3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“2년”을 “3년”으로 한다.

라.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에 의한 환수

제11조의2제1항제4호 전단 중 “과징금 부과를 통하여”를 “과징금, 부담금 또는 가산금 등의 부과처분을 통하여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청은 시의 수입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, 그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. 다만,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⑥ ~ ⑧ (생략)

제11조의2(포상금) ① 시장은 공익제보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시 재정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 제11조에 따른 보상금이나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과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다.

1. ~ 3. (생략)

4. 과태료, 과징금 부과를 통하여 시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. 다만 제2조제9호의 내부 공익신고자가 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.

5. ~ 7. (생략)

② (생략)

----- 3년 -----

-----.

⑥ ~ ⑧ (현행과 같음)

제11조의2(포상금) ① -----

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4. ----- 과징금, 부담금 또는 가산금 등의 부과처분을 통하여 -----

-----.

5. ~ 7.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

(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)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의안명 : 「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
- 해당없음(예산 수반사항 없음)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 제1항 및 2항
- 비용추계서 제출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

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

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 ① 의원·위원회·시장·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·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
 2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-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3. 미첨부 사유

「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은 상위법인 「공익신고자 보호법」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부패·공익신고를 활성화하고 신고자 보호·지원을 강화하는 것으로 수반되는 비용이 없음.

4. 작성자

-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 이정진(02-2133-3449)